

NEWSLETTER

2026년 6월

법률정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납세자 사업
장 세무조사: 기업이 유
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
인가?**



목차:

1.

세무조사의 원칙

2.

납세자 사업장에서 세무조사가 실시되는 경우

3.

세무조사의 기간

4.

세무조사 재조사 제도



세무조사는 위험관리 원칙과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수행하며, 전자자료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원격 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세무조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납세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저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세금 신고·납부 내용의 완전성, 정확성 및 진실성을 검증하고, 세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위법행위에 대한 증거나 재조사가 필요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조사는 감독·감사기관 또는 국가감사원의 감사·조사와 조사 내용, 범위 및 시기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대하여 독립기업원칙 및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검토를 수행한다. 독립기업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기업의 납세의무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특수관계자 거래는 과세 목적상 부인될 수 있다.

1. 2025년 조세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행됩니다.

2. 납세자 사업장에서 세무조사가 실시되는 경우

- 사전 환급 심사 대상 서류에 해당하는 경우
- 세무 분야 법령 위반 징후가 있는 경우
- 고위험 납세자의 세금 면제·감면·징수 면제 신청 서류에 해당하는 경우
- 관할 기관 또는 권한 있는 자의 요구·요청에 의한 경우
- 계획 또는 특별 주제에 따라 선정된 경우
- 세무 관련 민원·고발 처리를 위한 조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세무 관리상 리스크 관리 원칙에 따라 선환급 대상 서류 중 사후 환급 심사 대상에 해당하며,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 고위험 납세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분할, 분리, 합병, 통합, 기업 형태 전환, 파산, 해산, 영업 중단, 주식회사 전환, 납세자 번호 효력 종료, 사업장 이전

- 세무 관할 기관은 납세자에게 소명 및 정보·자료 보안을 요구하거나, 세액 결정 처분, 세무 행정 위반 제재, 또는 납세자 사업장 현장 조사로 전환할 권한을 가진다.

유의 사항

세관당국은 위에서 언급된 경우에 납세자의 사업장 등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사후심사는 관세법에 따라 수행되며, 세제 혜택 또는 세정책 적용 요건에 대한 심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된다.

연간 조사계획, 주제별 조사 프로그램에 따라 선정된 경우 또는 기업의 분할, 분리, 합병, 통합, 전환, 파산, 해산, 영업 종료, 주식화, 사업자등록번호 말소, 사업장 이전 등의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경우, 세무당국은 1개 역년 기준으로 납세자의 사업장에서 1회를 초과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다만, 「조세관리법 2025」 제22조 제6항 제(a)호에 따른 재조사의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세무조사의 기간

01

일반 세무조사: 조사결정이 공표된 날부터 최대 20일이며, 1회에 한하여 최대 2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02

특수관계자 거래가 포함된 세무조사: 최대 40일이며, 1회에 한하여 최대 4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03

해외 세무당국으로부터 정보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 조사 기간은 연장될 수 있으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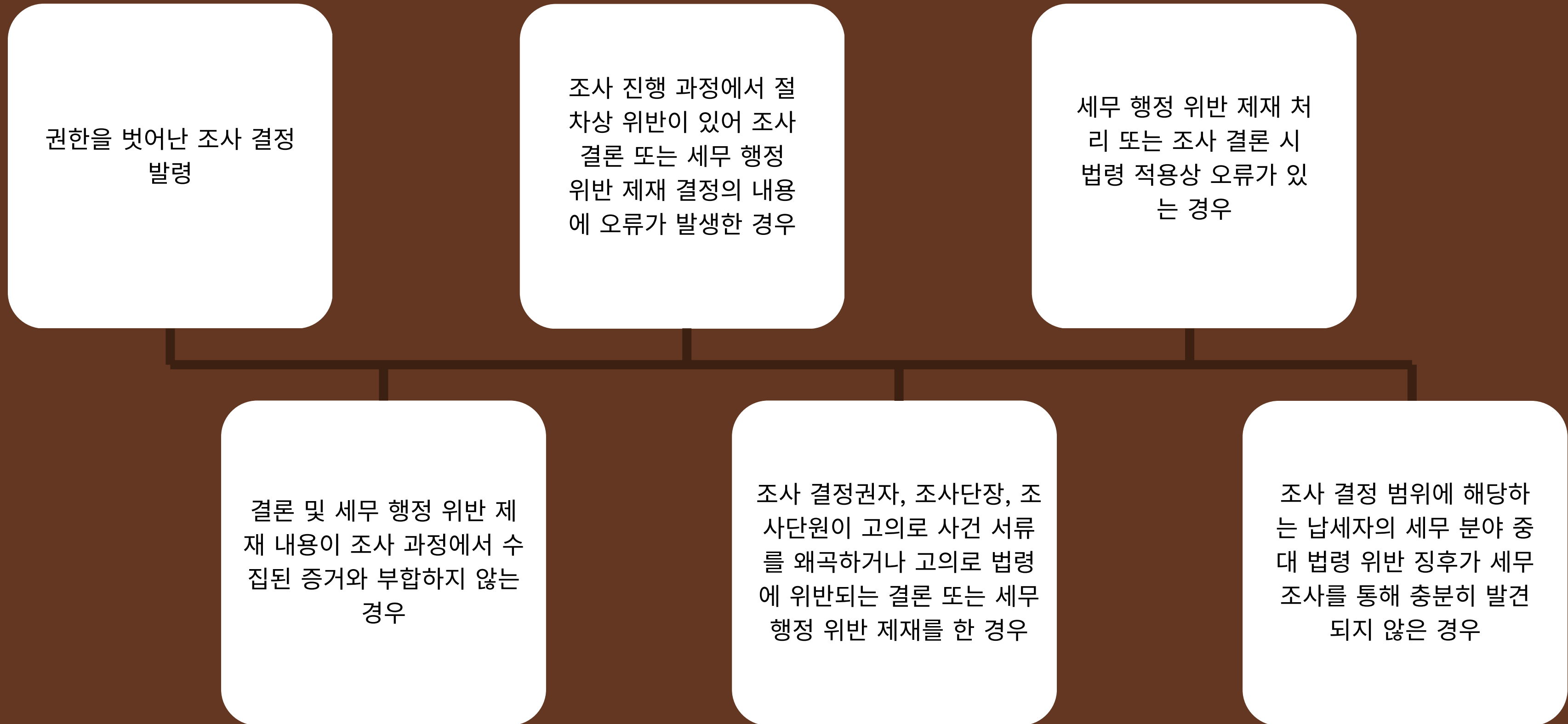
비고:

상기 기간에는 세무당국이 공식적으로 통지한 조사 중지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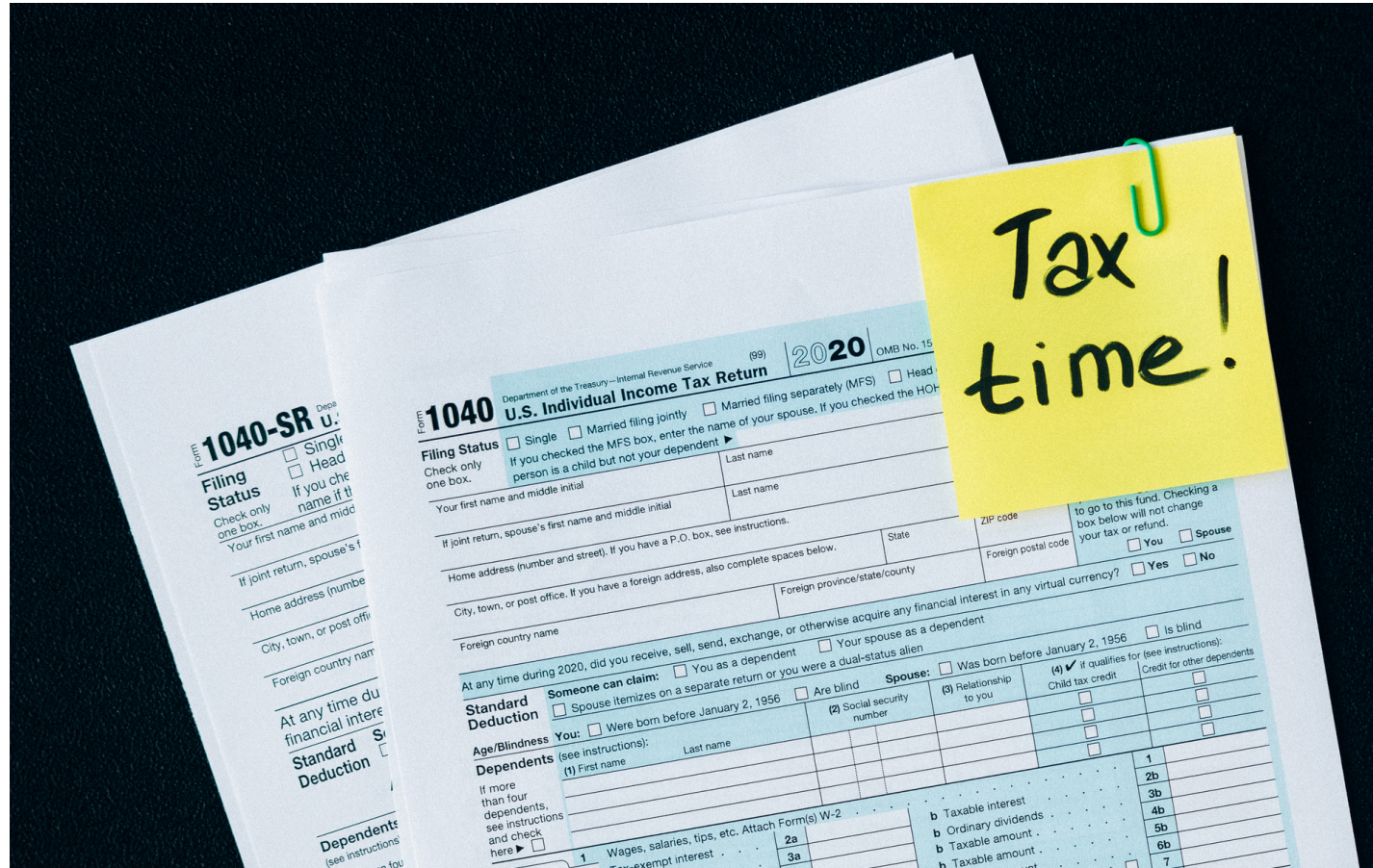


4. 세무조사의 재조사

(i) 재조사가 가능한 경우



4. 세무조사 활동에 대한 재조사



법적 근거:

조세관리법 2025년 제22조 제6항

ii.

재조사 실시 권한

상급 세무당국은 하급 세무당국이 이미 처리한 사안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iii.

재조사 기간

재조사 기간은 본 문서 제3항에 규정된 세무조사 기간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iv.

재조사의 제척기간

재조사는 원래의 조사결론 또는 세무행정 제재처분 결정이 서명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개시될 수 있다.

Hankuk Lawfirm

Website:

<https://hankuklawfirm.com/vi/>

Hotline/Zalo: 0942 339 063

Kakaotalk: Hankuklawfirm



HANKUK
Law Firm

THANK YOU!